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속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 해양수산국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8월 12일, 정근수 의원 외 31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8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2022년 8월 25일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정근수 의원

나. 제안이유

- 낚시 관리 및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정책 추진을 촉진하여 낚시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낚시 관리, 낚시관련 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 낚시 관리, 낚시관련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낚시환경지킴이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낚시 관리, 낚시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과 불법낚시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함(안 제7조)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장채식)

가. 본 조례의 제정은

- 「낙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건전한 낙시문화를 조성하고 낙시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됨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목적 및 정의(일부발췌)

제1조(목적) 이 법은 낙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낙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낙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사회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낙시”란 낙신탄과 낙신히, 낙신탄 등 도구(이하 “낙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2. “낙시인”이란 낙시터에서 낙시를 하거나 낙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낙시터”란 낙시가 이루어지는 바다·바닷가·내수면 등의 장소를 말한다.
4. “낙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낙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낙시인이 낙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낙시터업자”란 낙시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낙시어선업”이란 낙시인을 낙시어선에 승선시켜 낙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낙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낙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낙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
8. “낙시어선업자”란 낙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입 법 사 례

조 례 명	비 고
경기도 낙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2020.11.12. 제정
울산광역시 낙시 관리 및 육성 지원 조례	2021.03.18. 제정
전라북도 낙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2021.12.10. 제정
전라남도 낙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2021.11.04. 일부개정

나. 주요 내용은

- 본 조례안은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지원사업 등 본칙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

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낙시”란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낙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낙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4. “낙시 관련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과 낙시용 기자재 제조·유통·판매업 등을 말한다.
5. “낙시환경지킴이”란 낙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지도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대부분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을 따르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낙시 관리 및 낙시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낙시 관리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낙시 관리 및 낙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
- 안 제5조는 도지사가 낙시문화 조성 및 낙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을 각 호에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낙시환경지킴이 위촉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낙시 명예감시원 세부활동(한국어촌어항공단, 2022)

구 분	세부활동(안)	
홍보	· 명예감시원 활동 목적 및 주요 임무 홍보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안전관리 등 정책 홍보 · 캠페인용 포스터 리플릿 등 현장 배포게시	· 낙시전문교육(낙시터, 낙시어선, 신규재개자 대상) 이수 방법 안내 · 유튜버, 블로거 등 인플루언서 활용 등
내수면	· 해빙기 안전사고 예찰 · 휴무낙시터의 안전시설 점검 · 얼음낙시터 안전점검(현장계도) · 수상좌대 누전 우려 전기시설 계도 · 부양성, 복원성 저하 낚은 좌대 점검 · 유해물질 낙시도구 사용 감시 · 낙시터업 화장실 등 편의시설 미설치 계도	· 사행행위, 금어기 위반 모니터링 · 낙시터 안전장비 설비 비치 점검 · 저수지 제방낙시 계도 · 유해어종 방류·방생 금지 계도 · 낙시터 밤낙시 텐트 질식사고 예찰 · 낙시로 포획한 수산동물 판매 모니터링 · 장마철 낙시터 및 위험지역 안전계도 등
해수면	· 방파제 낙시터 안전사고 예찰 · 낙시어선 안전장비 비치 상태 점검 · 낙시어선 운항시간 점검 · 해수면 수상좌대 등 안전시설 점검 · 선상낙시 안전장구 미착용 계도	· 무허가, 보험 미가입 낙시어선 위반행위 점검 · 선상 음주 행위, 무신고 출항, 인원 초과 등 계도 · 낙시로 포획한 수산동물 판매 모니터링 · 나홀로 갯바위, 방파제 낙시 계도 등

낙시 안전 지킴이(해양수산부 낙시진흥 기본계획 중, 2020)

○ 민간의 자율적·주도적 노력을 통한 건전한 낙시문화 정착 유도를 위해 낙시 안전 지킴이 지정 및 운영('20~) - 낙시인 등 민간이 참여하여 갯바위, 방파제 등 낙시터와 낙시어선에서 일어나는 안전관리, 환경오염 및 낙시정책 등 홍보·계몽 ○ 낙시 관련 홍보와 연계 및 낙시해(海) 앱을 활용한 실적 보고 추진
--

- ⇒ 해양수산부의 유사 정책으로 '낙시 안전 지킴이' 사업이 있으며 현재는 '낙시 명예감시원'으로 변경되어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운영
- 안 제7조는 건전한 낙시 문화 조성 및 산업육성에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
 - 안 제8조는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낚시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대중화된 레저 활동으로 관련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특히 반도 지형과 저수지가 많은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낚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무분별한 낚시 활동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비롯하여 낚시문화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관련 산업 지원 및 안전 문제 개선도 시급한 실정임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관련 정책 추진을 촉진하여 관련 문제를 개선해 나가며, 낚시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조례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문제가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